

# 이사회 규정

2020. 10. 27.



## 전 문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이사회는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이 '구성원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의 정관 전문에 반영된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 [경영철학의 실행]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 고유의 기업문화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Brand 보유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기업문화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K Brand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 실행하도록 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전문위원회
    - 가. 거버넌스위원회
- ③ 전항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④ 이사회에 이사회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보조간사를 둔다.

### 제3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의 임기는 선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의장직을 수행한다.
  1.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2. 감사위원회 위원장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4. 대표이사(복수일 경우 연장자 순)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복수일 경우 연장자 순)

### 제2장 이사회 소집

### 제4조 [회의장소 등]

- ① 이사회는 회사 본점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도 이와 같다.

### 제5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 이사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 [소집통지]

- ①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간사가 회의일자, 장소, 목적사항을 이사회 심의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와 함께, 회의일보다 적어도 5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집통지는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본 조 제1항의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을 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사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에는 본 조 제1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최될 수 있다.

## 제7조 [의안 제출]

- ① 이사회 의안과 그 제안 이유(이 규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한다)는 각 이사가 작성하여, 적어도 이사회 회의일 10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이사회 간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전항의 의안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부의한다.

## 제3장 이사회 및 이사

## 제8조 [이사회 결의사항]

- 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기타 경영지배구조 관련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 안건 채택

2.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지정
3.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
4. 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5. 대표이사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 주주총회를 주재할 이사의 순위 결정
6. 이사회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
7.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기타 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 위원의 선임과 해임
8. 필요시 각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사외이사 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11.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12.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소송참가
13.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4. 정관의 변경
15. 이사회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16. 이사에 대한 전문가 조력의 결정
17. 이 규정 전문에서 정한 경영철학의 실행을 위한 회사 경영관리체계의 정립 및 수정

② 투자 및 기획관리 사항

1. 당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서, 출자액의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해산,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
2.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자산의 취득
4.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신규 시설 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5. 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해산 및 회사의 계속

- 
7.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단,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가.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 나.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 다.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회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영업의 양수
    - 라. 영업전부의 양수
    - 마.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기로 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③ 회계 및 재무관리 사항

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영업보고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의 승인
2. 중간배당, 주식배당
3. 준비금의 기본전입
4. 신주의 발행
5. 정관에 따른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6.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7. 자본 감소
8.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
9.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10.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11. 사채의 발행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음)
1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특수사채의 발행사항 결정

- 
13. 10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 또는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 제공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 후 사후보고할 수 있다.
  14. 회사 주요자산(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의 담보제공 또는 처분. 단, 출자지분 처분의 경우 본 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15. 30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외 차입계약(1년 이내의 단기차입 제외) 및 300억 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16. 이익배당한도 내의 주식소각
  17.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 ④ 인력 및 조직관리 사항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2.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이사회 승인
  3. 이사의 경업거래의 승인 및 승인 없는 경업거래에 대한 개입권 행사
  4.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이사회 승인
  5.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 제도의 도입
  6. 이사 해임안 제출
  7.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8.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른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
  9. 임원관리규정의 제·개정
  10.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 ⑤ 기타 주요 경영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2.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제9조 [결의사항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장에 명시된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각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 [이사회 보고사항]

-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경영계획
  2. 분기 경영실적
  3. 정기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4. 각자 대표이사의 업무 분장이 있을 경우 그 업무 분장에 대한 사항
  5. 300억 원을 초과하는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자산의 취득,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에 대한 분기별 실적
  6.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한 경우 그 집행결과
  7.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②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연 1회 보고한다.
- ③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및 계획을 이사회에 반기 1회 보고한다.
- ④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대표이사]

- ①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고 부여된 권한 하에서 이를 결정·집행한다.
-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이사회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의 달성, 시행 및 집행
  2.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이외의 제반 사항 결정 및 집행
  3.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약정을 하는 행위
  4. 임직원에 대한 순차적인 권한의 재위임
- ③ 복수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각 대표이사의 업무 분장을 구분할 경우 그 업무 분장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업무 분장 내용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각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간 협의를 통해 개별 업무를 결정 및 집행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 회장은 SK그룹[본 규정에서 SK그룹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근간으로 한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경영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회사들로 구성된 회사들의 집합을 의미한다.]과 경영철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아래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대외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SK그룹 구성원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2. 대내적으로 SK그룹 소속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언·경영자문 등을 제공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다만, 그 조력 사항의 반영 여부는 SK그룹 소속 회사가 각 사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책임과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제4장 이사회 심의 의결

###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이사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 외부인사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 [의결의 채택]

- ① 이사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사 전원의 과반수를 회의 정족수로 한다.
- ② 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모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다만, 본 규정 제8조 제4항 제2호(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제8조 제4항 제4호(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제14조 [의사록 등]

- ①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의사 경과 요령과 채택된 결과 및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를 주재한 의장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 및 위원이 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② 간사는 필요한 경우 전항의 의사록의 부분을 작성하여 즉시 의안을 제출한 임원 또는 업무상 관계 있는 임원에게 송부한다.
- ③ 이사회 부의 안건과 의사록은 이사회 간사가 이를 보존한다.

### 제5장 이사

#### 제15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 내 담당 임직원이 작성 또는 제출한 품의서, 통보서, 보고서 및 각종 회계자료 등과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 그리고 회사 내 각종 전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신뢰하고 이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사가 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는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는 당해 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의 직을 사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⑥ 이사는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이사는 업무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⑧ 이사가 본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⑨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1996년 1월 1일 제정**

**1997년 4월 1일 부분 개정**

**1999년 2월 26일 부분 개정**

**2000년 3월 14일 ISO인증 관련 전면 개정**

**2000년 4월 7일 ISO인증 예비심사 결과 반영 부분 개정**

**2004년 4월 30일 부분 개정**

**2005년 8월 25일 이사회 중심 경영 도입 부분 개정**

**2007년 2월 22일 부분 개정**

**2008년 3월 25일 부분 개정**

**2010년 7월 21일 전면 개정**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9조 및 제10조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본과 자산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른다.
  1.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최근 사업연도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반영한 금액)
  2.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012년 3월 23일 부분 개정**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8월 3일 전면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2월 25일 부분 개정**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본과 자산총액은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2017년 2월 27일 부분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019년 3월 27일 부분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020년 3월 25일 부분 개정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0호의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년 10월 27일 부분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